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64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용민·문정복·한준호

이성윤 · 전재수 · 이병진

박지원 · 모경종 · 김승원

임미애 • 부승찬 • 이건태

주철현 • 문진석 • 강유정

민형배 • 장경태 • 전혂희

김 현·김용만·김동아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0년 이상 변호사 등 일정한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부칙에서 정한 경과조치에따라 그 시행시기가 유예되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판사를 임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일정한 법조경력을 갖춘 사람을 판사로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제도는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었음. 여기에는 사회적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판사가 사회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실현할 수 있 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법조일원화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판사의 근무여건 개선, 법조일원화제도에 부합하는 재판제도의 변화, 법조인 구의 확대 및 질적 개선 등 여건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제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데 별다른 진전이 없 었고,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조일원화제도가 시행됨 에 따라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이 크게 부각되어 여러 문제로 나타나 고 있음. 판사 지원자가 충분하지 않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인재가 판 사로 임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판사들이 고령화되어 업무 처리의 효율 성이 저하되고 있음. 여기에 현재 판사의 수뿐만 아니라 판사의 업무 를 보조할 재판연구원의 수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발전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와 업무량이 증가하여 판사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임을 고려하면,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이 현재와 같이 유지되 거나 그보다 강화될 경우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법적 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 됨.

법조일원화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고, 법조일원화제도를 통해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정과 실력을 겸비하고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들이 조화롭게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등으로 판사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판사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20년 이상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를 전담하는 전담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 및 제42조의3).

법률 제 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 전단 중 "10년 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만,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에 대해서는 특정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차를 별도로 실시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의3제1항 중 "5년 미만인"을 "10년 미만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배치된 판사의 수, 인력수급 사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임용자격) ① (생 략)	제42조(임용자격) ① (현행과 같
	승)
② 판사는 <u>10년 이상</u> 제1항 각	② 5 <u>년 이상</u>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u>판사의 임용에는 성</u>	<u>다만, 20년 이상 제</u>
별, 연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에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	대해서는 특정 재판사무를 담
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당하는 판사의 임용을 위한 절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차를 별도로 실시한다.
<u>한다.</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
	령, 법조경력의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
	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
	<u>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u>
<u>④</u> (생 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의3(직무권한의 제한) 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재직기간	
을 합산하여 <u>5년 미만인</u> 판사	<u>10년 미만인</u>
는 변론을 열어 판결하는 사건	
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재판할	
수 없다.	<u>.</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 법률 제10861호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판사 임용을 위한 재직연 수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 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 월 31일까지 판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제42조제1 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 에서, 2018년 1월 1일부터 202 4년 12월 31일까지 판사를 임 용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제4 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2025년 1월 1일 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판 사를 임용하는 경우에는 7년 이상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 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할 수 있다.

③ 대법원장은 각급 법원에 배 치된 판사의 수, 인력수급 사 정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그 소속판사로 하여금 제1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재판할 것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법률 부칙

<삭 제>